

부가가치세 적용 및 환급 안내

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알려드립니다.
2018년 1월 1일 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시험평가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전환됩니다.

적용 일자

- ▶ 2018년 1월 1일 부터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10% 적용
(주의) 2017년도 접수 건이라도 세금계산서를 2018년1월1일 이후 발행 할 경우 부가가치세 10%가 별도 부과됨

적용 범위

- ▶ 시험평가서비스
(수탁 및 위탁계약에 의한 물량정산 방식의 시험평가 서비스도 적용)
- ▶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거래처 제공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

환급 안내

- ▶ 납부하신 (매입)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으실 수 있사오니 귀사의 부가가치세 담당부서에 관련 사항의 전달 부탁드립니다.